

외국인 근로자(E-9·H-2) 고용 사업장, 이제는 '찾아가는 현장 컨설팅' 받을 수 있습니다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외국인 근로자(E-9, H-2)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'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(외국인팀)와 인력공단,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·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,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, 임금 등 근로조건,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.

| | |
|-------------|--|
| 고용허가<고용노동부> |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, 숙소, 사업장변경 등 외국인력 체류관리 |
| 애로해소<인력공단> | 언어소통(통역지원), 직장동료(상사) 갈등, 심리상담, 고충 등 지원 등 |
| 산업안전<안전공단> | 안전보건수칙, 안전보건관리체계,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|
| 노동법<공인노무사> | 임금, 근로시간, 휴일휴가 등 노동법 관련 |

특히,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,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(통역)소통·사업장 갈등(애로)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*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.

- ▲ 언어소통(통역지원), 직장동료(상사)와의 갈등, 일상생활 고충 등 애로 및 갈등 해소,
- ▲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상담 기관으로 연계 등

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(E-9, H-2)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(지역협력과 외국인팀)로 문의·신청할 수 있고,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.

김은철 국제협력관은 “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, 이번 현장컨설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오기환 (044-202-7157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동희 (044-202-7739) |
| 담당 부서 |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| 책임자 | 과 장 | 하창용 (044-202-7553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경희 (044-202-7552) |
| 담당 부서 |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지혜 (044-202-892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양운 (044-202-8930) |

<외국인근로자 · 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>

현장컨설팅은 무엇인가요?

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, 안전보건공단,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 · 근로기준 · 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(통역) · 고충(갈등)해소까지 「찾아가는 현장컨설팅」으로 지원해 드립니다.

현장컨설팅 대상은?

- 고용허가(E-9 · H-2)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

현장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지원내용은?

- 외국인 근로자 주거 · 숙식비 · 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
- 임금, 근로시간, 휴일 · 휴가, 근로계약,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
- 안전보건수칙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
- 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 · 사업장 내 갈등,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
- 외국인근로자 · 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

현장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 ·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현장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